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 **2023. 1. 18.(수)~1. 27.(금)까지 나이스 등록 후 증빙서류 꼭! 제출해주세요.**
-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기본으로 등록되며, **2023년 5월 중 개별적으로 본인 주소 관할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받으셔야 합니다.**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알아보기** 👉
[2023년 1월 15일(토) 오픈 예정]

-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2023. 1. 15.(토) 오픈될 예정이나, **2023. 1. 16(일)부터 PDF파일 다운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음
 - 👉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해당 소득·세액공제 영수증을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해야 합니다.
- ▶ **연말정산 자료는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등록**
 - 배우자, 부모님 등 연 100만 원 이상 소득 유무 확인(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자녀 관련(기본공제 및 나이 요건 확인), 주택 관련(무주택 세대주만 가능/일부 예외 있음) 등
- ▶ **공제요건은 스스로 검토**
 - 👉 특히, **주택자금 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대상 금액은 아님.**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공제 충족 요건을 충분히 확인 후, 해당될 시 신청
 - 👉 **맞벌이 부부 중복 공제 유의**
- ▶ **과다공제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 시** 소득자 본인 직접 관할세무서 **자진신고** 해야함

《 연말정산 상담 전화 킷메뉴 》

- ▶ 연말정산간소화(홈택스 사이트) 이용방법: 국번없이 126 → 5 → 1
- ▶ 연말정산 세법상담: 국번없이 126 → 5 → 2
- ▶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동영상, 자료 등 설명):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
- ▶ **쉽게 요건 체크하기:** 국세청 홈택스 클릭👉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 제 출 서 류 ◆

| 등록 및 제출 기한 | | 2023. 1. 18.(수)~2023. 1. 27.(금)까지 | |
|---|-----------|--|---|
| 제출서류 | | 제출 대상 | 방 법 |
| 나 이 스 자 료 | ①소득공제신고서 | 전교직원 |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소득공제신고서탭->귀속년도(2022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 | ②의료비공제신고서 | 의료비 등록한 해당자 |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귀속년도(2022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 | ③기부금공제신고서 | 기부금 등록한 해당자 |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기부금명세서등록->귀속년도(2022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국세청 자료 외 수기로 등록할 경우, 적격 기부금 단체 입증 서류 추가 제출(3p 세부사항 참고) |
| | ④연금저축공제 | 연금저축 등록한 해당자 |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연금저축공제등록->귀속년도(2022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 | ⑤월세명세서 | 월세 등록한 해당자 |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월세명세서등록->귀속년도(2022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 ⑥주택자금공제명세서 | | 공제 해당자 | ☞ 국세청간소화서비스출력물 외 4p 세부사항 참고 |
| ⑦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본) | | 전교직원 | ☞ 민원24: http://www.minwon.go.kr (주민등록번호 전체 다 표기해서 제출, 검토 시 필요) |
| ⑦-2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본) | | 인적공제 대상자가 등본에 없는 경우 (부양가족대상이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주민등록번호 전체 다 표기해서 제출, 검토 시 필요) |
| ⑧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PDF파일 | | 전교직원 | ☞ 국세청홈택스(http://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은 “PDF파일” 출력 해서 제출 ☞ 상세절차: 국세청홈택스 인증서 로그인->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귀속년도 (2022년)->※ 근로소득있는 월만 선택 -> 건강보험부터 기부금까지 돈보기 클릭(★해당 공제 아래에 기본공제 대상자에만 체크) -> 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 ->PDF파일 암호 없이 저장[파일명예시: 홍길동(생년월 일)-2022년 자료.pdf] -> 출력 |
| ⑨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외의 자료 및 기타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등) | | 해당자료가 있는 사람 | ☞ 수기등록 자료 :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영수증 등(원본-도장 확인) ☞ 주민센터(장애인복지카드), 병원(암환자증명서) 등 |
| ⑩ (중도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중도입사자로 입사 전 근무지가 있는 경우 | ☞ 전임학교 또는 회사 ☞ 기간제교사는 일괄 민원 신청 완료됨(제출불요) |

※ 나이스에 파일 업로드 후, 해당되는 서류를 모두 제출(모든 신고서에는 **“신고인”란에 성명 기재 후 서명**)

◆ 제출서류 상세 참고사항 ◆

① 인적공제(기본공제)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귀속년도(2022년)->인적공제 탭)

※기본공제: 60세 이상 직계비속(1962. 12. 31. 이전 출생자), 20세 이하 직계비속(2002. 1. 1. 이후 출생자) 해당

cf. 자녀세액공제: 7세 이상~20세 이하 가능(2016. 1. 1. 이후 출생자는 7세 미만으로 자녀세액공제 제외)

※ (임수사항1) 주민등록번호는 가운데 - 기호 없이 숫자만 입력해야 합니다.

(예시) 700101-1234567(x) → 7001011234567(o)

※ (임수사항2) 인적공제 대상 여부 반드시 확인

☞ 대상자의 경우: 나이스 업로드 화면의 인적공제 탭 - 해당자 기본공제란에 √체크

☞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체크 해제

② 의료비공제신고서(해당자만 제출)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귀속년도(2022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의료비영수증 국세청에서 누락된 자료 제출할 때 의사 및 약사의 도장이 있는지 확인, 없을 시 제외
(환자 인적사항도 필수 기재)

※ 안경/렌즈 구입비 영수증(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하여 발급
보청기, 장애인장구 구입비: 판매자가 사용자 성명을 확인하여 발급한 영수증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함(아닐시 공제 불가)

※ 보험회사(실손 등), 건보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액은 세액 공제 불가

- 실손보험금액이 있을 경우 나이스 의료비지급명세서 탭에서 제외등록

- 실손의료보험금 금액은 개인이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My홈택스→실손의료보험금조회→실손의료보험금조회에서 해당 금액 확인하여 제외등록 처리)

③ 기부금공제신고서(해당자만 제출)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기부금명세서등록->귀속년도(2022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사업자등록번호와 기부자 주민등록번호 정확히 입력(가운데 -기호 없이 숫자만 입력)**

※ 국세청 조회자료 외 기부금 등록 시,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 및 아래 증빙서류 추가 제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수기 입력 시(교회, 절 등)**: 법인설립허가증(필수: 국세청 자료에서 금액 조회되지 않는 경우),

소속증명서(법인설립허가증과 해당 단체 이름이 불일치하는 경우), 고유번호증(입력참고용, **고유번호증으로는 증빙 불가**)

※ **교원연합회비는 행정실에서 일괄 입력**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불가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세액공제 불가

④ 연금저축공제(해당자만 제출)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연금저축공제등록->귀속년도(2022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연금저축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공제 조건: 무주택 세대주(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 중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소득자이면서, ★무주택 확인서를 온/오프라인 은행에서 발급받아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 제출 서류: 은행에 주택청약 소득공제 등록 필수(최초 1회), 무주택 확인서, 납입증명서(국세청에 뜨지 않을 시)

- ⑤ **월세액 명세서(해당자만 제출):** 해당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 금액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월세명세서등록->귀속년도(2022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 월세액 공제 조건: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주가 받지 않을 시 일정 요건의 세대원 포함) 중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소득자 공제 가능
-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⑥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해당자만 제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공제대상요건: 22. 12. 31. 현재 무주택 세대주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 공제 가능)
- **제출서류:** 주택자금 상환액 증명서류(홈택스의 소득공제증명서류 제출 가능), 주민등록등본 제출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등 제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 공제 가능)**

- 공제대상요건: 22. 12. 31.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 공제 가능(2주택 이상 보유 시 불가)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5억원 이하('06년~'13년: 3억원, '14년~'18년: 4억원) 가능
- **제출서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해당 금융회사 등이 발행), 주민등록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취득 시 공동(개별)주택 가격확인서(참고: www.realtyprice.kr) 제출

※**나이스 확인 사항(전교직원 해당)**

1. 주소 변경 방법: NEIS - 나의메뉴 - 인사기록 - 기본사항(개인신상 탭)
2. **세대주 여부 선택(필수):** NEIS - 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기본사항 탭) 세대주/세대원 선택

■ **국세청 홈택스 PDF파일 다운로드 및 나이스 등록 방법** ■

2023. 1. 18.(수)~1. 27.(금)까지

-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3. 1. 15.(토) 오픈 예정
- ▶ 2023년 1월 16일(일)부터 PDF파일 다운 권장(서비스 안정화 고려)
- ▶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은 홈택스에서 다운받은 PDF파일 업로드로 진행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
- 본인의 소득공제를 조회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2021년 연말정산부터 **민간 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 가능),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단,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별도 동의 절차가 없어도 조회 가능)



연말정산간소화

병원·은행 등 영수증 발급처에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개인·사업자 등 홈택스 로그인 사용자 유형별로 메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근로자(연말정산 자료 조회) : 매일 06:00~24:00
- 영수증 발급처(공제자료 제출) : 1월1일~7일 06:00~24:00
- 기부금 단체(자료제출 신청) : 11월 중 06:00~24:00

근로자(부양가족 포함)

1. 공동인증서 등 로그인 > 2. 자료제공 동의 신청 > 3. 연말정산 자료조회 > 4. PDF 다운로드/인쇄 > 5. 회사 제출

신청 > 조회(근로자) 3

공제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는 제외 >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처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

▶ 연말정산 자료 조회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
- 소득·세액공제 조회/발급(사업소득자) >
-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

*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동의/취소 방법(설명서)

- 본인인증 수단이 있는 경우
 - 본인인증 수단 안내
 - 본인인증 신청 >
 - 미성년자녀 신청 (부모의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
-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 신청서 작성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아래 방식에서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화면으로 신청 >
 - 팩스신청 >
 -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 >

2. 로그인: 공동인증서 활용(나이스, 은행 등 본인 명의 인증서), 비회원 로그인 가능
(간편인증 선택 시 카카오톡, 네이버 인증서 등 민간 인증서 사용 가능)

3. 귀속년도 2022년->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선택->건강보험부터 기부금까지 돋보기 클릭(항목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분만 체크)->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PDF파일 저장 **파일명:홍길동(생년월일)-2022년도 자료.pdf**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조회/발급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내역조회

연말정산 미리보기 > 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 > 7 한 항목 한번에 인쇄하기

* 귀속년도 2022년 > 전체선택 > 선택해제 > 1월 7월 > 2월 8월 > 3월 9월 > 4월 10월 > 5월 11월 > 6월 12월 > 5

보험료 (Insurance) > 의료비 (Medical Expenses) > 교육비 (Education Expenses) > 신용카드 (Credit Card) > 직불카드 (Debit Card) > 현금영수증 (Cash Receipt)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Pension Savings) > 주택자금 (Housing Funds) > 6 주택미리저축 (Home Purchasing Savings)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Long-term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savings)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Membership Fee For Small Size Enterprises) > 기부금 (Donation)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조회 안내 > 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선택

· 자료 조회 및 출력 절차

보험료에서부터 기부금까지 돋보기 클릭 아래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분만 체크

의료비 (Medical Expenses) > 교육비 (Educational Expenses)

step 3. 내용확인 (출력하지 않을 자료는 선택해제)

공제신고서 작성 (선택된 본인 및 부양가족의 반영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전신작성),

step 4. 예상세액 계산 (연말정산 세액 자도계산,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출력 및 다운로드

step 5. 회사에 제출 (출력물,PDF,온라인 제출)

본 서비스는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납세자에게 일괄 제공하는 것으로 소득·세액공제 대상, 공제한 도액 등의 공제요건은 소득·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공제요건 위반, 부양가족 중복공제(근로자 2인 이상이 동일인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받는 경우), 자녀양육비 중복공제(맞벌이 부부가 자녀양육비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등 부당하게 소득·세액공제를 받으면 사후에 세금(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DF파일로 다운로드 저장
ex) 파일명: 홍길동(생년월일)-2022년 연말정산 자료

(*기간제교사 및 휴직자: 2022년 중 근로소득이 없는 달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이 지급된 월만 체크박스 선택하여 다운)

4.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자 확인 및 안경구매정보 등록하기(해당자만)

① 의료비를 클릭하여 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확인, 안경구매 정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③ 안경구매정보를 클릭하면 자료가 조회되며 ④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등록 됨.

5. 나이스 → 나의메뉴 → 연말정산 → 정산공제자료등록 → 귀속년도 2022년 → 조회 → PDF업로드 → 찾기 [홈텍스에서 다운 받은 PDF파일 파일명:홍길동(생년월일)-2022년 자료.pdf] 파일 찾기->등록

※ 파일 업로드시 주의사항

- PDF파일 기본 확인은 국세청 소득세액공제 자료 내려받기에서 [참고2] 사항을 참고하거나 홈텍스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기본 확인용 프로그램을 받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PDF파일 등록 시 기존에 등록된 내용을 먼저 삭제하고나서 첨부한 파일을 등록합니다.
- 업로드시 인적공제내역에 존재하지 않는 자료는 등록 안 되오니 먼저 인적공제내역에 입력 후 등록하십시오.
- 상세내역(의료비, 기부금, (개인)연금저축/퇴직연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증권저축) 자료만 개별내역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PDF파일 다운로드시 비밀번호를 설정한 경우 비밀번호 입력란에 입력해야 합니다.
- PDF파일업로드 메뉴에서 등록된 파일은 업로드 이후에는 업로드 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자 개인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다운받은 공제자료를 업로드 하는 메뉴로 ⑤PDF업로드에서 ⑥연말내역이나 ⑦일부 자료만 선택하여 업로드 할 수 있다.

* 나이스에 파일 업로드 시 ⑧인적공제에 존재하는 대상자만 업로드가 가능하므로, 공제대상자가 인적공제에 먼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인적공제에 직접 등록 가능)
(예) 배우자의 소득공제를 본인이 할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 국세청 파일 업로드 시 주의사항 👈

- ▶ 나이스 인적공제(탭)에 존재하지 않는 자료는 국세청 업로드가 안 되오니 먼저 나이스에 소득공제 대상자 입력 후 파일 업로드 바랍니다.
 - ①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인적공제(탭)에서 공제대상자 있는지 확인
 -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대상자가 없으면 추가하고, 해당 없는 대상자 삭제)
 - 인적공제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확인 필요
 - ②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PDF업로드(탭): 업로드
- ▶ 상세내역(의료비, 기부금, (개인)연금저축/퇴직연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증권저축) 자료만 개별 내역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PDF파일 다운로드시 비밀번호를 설정한 경우 비밀번호 입력란에 입력해야 합니다.

비고: 기간제교사 및 휴직자 국세청 연말정산 공제 자료 다운로드 시 유의사항

2022년 중 근로소득이 없는 달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 지급 월의 공제자료만 다운받아야 합니다.
(연간이 아닌 월별 내역으로 다운-해당 월만 선택하여 다운)

👉 나이스 입력 시 유의 사항 👈

- ▶ **※나이스 확인 사항(전교직원 해당)**
 1. 주소 변경 방법: NEIS - 나의메뉴 - 인사기록 - 기본사항(개인신상)
 2. 세대주 여부 선택(필수): NEIS-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기본사항-세대주/세대원 선택
- ▶ 국세청 홈택스 자료는 본인 및 공제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된 모든 자료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해당 자료를 나이스로 등록할 때는 공제가능여부(소득 등)를 본인이 확인하여 등록해야 함(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은 삭제 또는 0원 처리)
예) 피보험자가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세액공제 불가
- ▶ 정산공제자료 PDF파일 등록 전 인적공제 대상자 확인 후, 소득공제 기본대상자가 아닌 대상자는 삭제 후 업로드해야 합니다.
 - 홈택스에서 받은 파일의 기본공제 대상자와 나이스 정산공제자료-인적공제 기본대상자가 일치해야 함 (홈택스 PDF파일 다운로드 시에도 기본공제 대상자의 자료만 받아야 함)
-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가족을 등록하지 않아 PDF다운 못 받은 부양가족의 자료는 나이스-정산공제자료등록-인적공제(탭)에서 일일이 수기 등록하셔야 합니다.
- ▶ 수기 등록 시(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 기부금명세서등록 입력 시)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는 가운데 -기호 없이 숫자만 입력해야합니다. ex) 750308-1234567 →7503081234567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요건표

| 구 분 | 공 제 요 건 | | | | 비 고 | |
|----------|-------------------|---|--------|-----------------|----------------|----------------------------------|
|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동거 요건 | | | |
| | | | 주민등록동거 | 일시퇴거 허용 | | |
| 기본공제 | 본인 | × | × | × | | |
| | 배우자 | × | ○ | × | | |
|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 | △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 1962.12.31. 이전 | |
|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20세 이하 | ○ | × | 2002. 1. 1. 이후 | |
| |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 | ○ | × | | |
| | 형제자매 | 60세 이상 20세 이하 | ○ | ○ | ○ | 1962.12.31. 이전 2002. 1. 1. 이후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 | ○ | ○ | ○ | |
| | 위탁아동 | | ○ | | | |
| 추가공제 |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 | | |
| | 경로우대 |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 | | 1952.12.31. 이전 | |
| | 부녀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 | | | |
| | 한 부모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자 | | | | |
| 연금보험료 공제 | |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 | | | |

* 나이요건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구 분 |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 |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 비 고 | |
|---------------|--|-------------------------------------|-----------------|----------------------------------|--|
|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 | |
| 특별 소득공제 | 보험료 |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 (건강·노인장기요양·고용보험료) | | | |
| | 주택자금공제 | - | - | ○ | 본인만 가능 |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 | | |
| | 주택마련저축 |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 | | |
| | 신용카드 등 | × | ○ | ○ | 형제자매 제외 |
| 자녀세액공제 (7세이상) | ○ | ○ | - | 기본공제대상 자녀 (입양자·위탁아동 포함, 손자녀는 제외) | |
| 연금계좌세액공제 |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세액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 | | | |
| 특별 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 ○ | ○ | ○ | |
| | 의료비 | × | × | ○ | |
| | 교육비 | × | ○ | ○ | 직계존속 제외 *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가능 |
| | 기부금 | × | ○ | × | 기본공제대상자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 |
|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 적용 | | | | |